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

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1년 2월 25일 박종성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3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,

○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의 정비

-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→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- 법령에 「」 사용 :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→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- '~의 규정에 의한'를 '~에 따른'으로 변경

- 조례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도록 함.
- 그 밖에 일본식 표현(매, 당해 등),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

4. 검토의견

금번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내용으로는

○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의 정비
-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→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- 법령에 「」 사용 :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→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띄어쓰기(각호 → 각 호 등), 그 밖에 일본식 표현(매, 당해 등),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

금번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, 법제처의 알기

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